

고 시

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8-1호

별정우체국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전북지방우정청장

□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

○ 지정 취소내역

별정 우체국명	관할 우체국명	피지정인	별정우체국 위치	지정취소 사 유
완주상관	완주	한희준	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69 (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60-2)	피지정인 사망에 따른 승계자 자격요건 결격

○ 지정 취소일자 : 2018. 11. 2.